

# 케타민 향정신성의약품지정 관련 안내

지난해 12월호 대한수의사회지 홍보자료를 통해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최근 케타민이 동물약품상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판매되어 일반인들이 환각제로 사용하거나 일부 범죄에 이용하는 등 오·남용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동물병원 근무 수의사)에 한하여 사용, 관리 될 수 있도록 2005년 11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3개월후부터(2006년 2월 17일) 시행되며, 이후에는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되어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투약만 가능하며 제품상태의 판매나 동물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사용과 유통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현재 케타민의 생산업체인 (주)유한양행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하여 동물병원이 아닌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동물약품도매상 등에서 보유중인 케타민에 대하여 재고조사와 수거를 실시하였으며, 동물병원에서 사용 중인 케타민에 대하여는 안내문서 발송, 회신을 통해 정확한 수량을 조사하고 “향정신성”라벨을 교부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동물병원에서는 (주)유한양행에서 실시하는 동물병원 내의 케타민 수량조사와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예기간 동안에 케타민을 구입하려는 경우 등이 우려되므로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주)유한양행, 케타민관련 조치 계획 안내

### 경과 사항

일 자	내 용
'05년 1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05년 11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개정안 공포 : 유효기간 3개월
'06년 2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케타민 관리(향정신성의약품)

### 진행 현황

1. 케타민관련 조사 및 라벨교부 등 조치계획 확정
2. 동물약품 도매상 보유제품 반품/수거 : 동물약품 도매상 케타민 재고 조사 및 수거 완료(유한양행)
3. 스티커 규격 및 부착방식 : 소요 스티커 수량 파악 및 규격, 부착위치 확정 완료

### 동물약품 도매상의 마약류 도매상 자격여부 질의(보건복지부)

#### 향후 조치 계획

(주)유한양행에서는 케타민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에 따른 동물병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각 동물병원에서는 1차 안내문을 접수시 현 재고량을 파악하여 동봉된 반송우편을 이용하시어 우체통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1차 안내문의 반송우편을 근거로 유한양행에서는 “향정신성”라벨이 포함된 2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2차 안내문에는 라벨 부착위치, 방법, 작업완료 확인서를 동봉할 예정이오니 라벨을 부착하시고 동봉된 작업완료 확인서를 다시 반송우편에 넣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 1. 1차 안내문 발송

- 대상 : 전국 동물병원
- 기간 : '05년 12월 마지막주
- 내용 : 동물병원 내 케타민 재고량 조사
- 첨부
  - 케타민 향정신성의약품 분류에 따른 안내문 1부
  - 현재 동물병원 내 재고 확인서 1부
  - 반송 우편 봉투 1부

2. 1차 안내문 회신을 통한 재고량 파악

- 기간 : '06년 1월 중순(둘째주) 까지
- 내용 : 각 동물병원별 재고량 파악

3. 2차 안내문 발송 및 “향정신성”라벨 교부

- 대상 : 전국 동물병원
- 기간 : '06년 1월 셋째주
- 내용 : 동물병원 내 케타민 재고량에 부착할 “향정신성”라벨 교부
- 첨부
  - 케타민 향정신성의약품 분류에 따른 관리지침 및 라벨, 부착 안내문 1부
  - 라벨 작업완료 확인서 1부
  - 반송 우편 봉투 1부

4. 라벨작업 확인서 회신 확인

- 기간 : '06년 2월부터
- 내용 : 확인서 접수 및 미회신 동물병원 방문 안내

❖ “향정신성”라벨 부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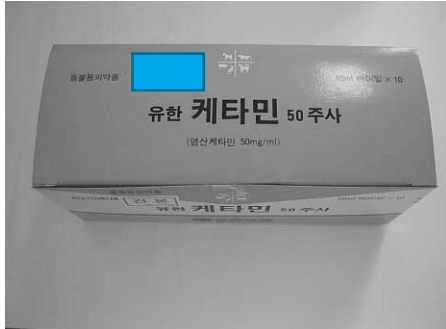
1. vial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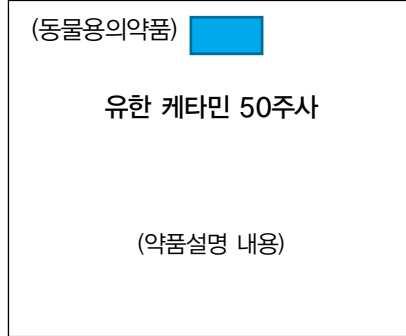
2. 1 Vial 외부 포장(개별 단지함)의 경우



3. 10 Vial 외부포장(10개입 타지함)의 경우



4. 첨부문서(약품설명서)의 경우



5. “향정신성” 라벨(적색)

**전문의약품**

**향정신성**

❖ '06년 2월 17일 이후 케타민(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변경사항

1. 식약청과 협의 하에 (주)유한양행 안내문을 통해 교부한 “향정신성”라벨을 부착한 케타민만 사용가능함
2. 케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관리요령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사항 참조”)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도매상을 통한 케타민의 구매(일반약품도매상이나 동물병원간에 양도, 양수, 매매 제한)
4. 진료목적의 투약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반에 판매할 수 없음

❖ (주)유한양행, 케타민관련 문의

- 담당자 : 동물약품영업부 김민수 수의사
- 연락처 : 02-828-0186 